

#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

## 1. 제안이유

방위사업청의 「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」 제정에 따른 신설·변경 사항 반영 및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활동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개정 사항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방위사업청 「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」 제정 관련 사항 반영

\* 기존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6개 규정 통합 및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사항 반영

#### 1)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(제1조)

\*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 →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

#### 2) 인증범위 및 인증기준 변경 시 후속조치 사항명시(제5조)

#### 3) 인증신청 대상 업체자격 관련 방위사업법령 내용반영(제6조)

#### 4) 사후관리심사 대상 및 주기 등 개정내용 반영(제19조, 별표 제7호)

#### 5) 부적격업체 및 인증취소업체재신청 제한 기간 강화(제23조, 제25조)

\* 인증취소업체 : 6개월 → 1년, 부적격업체 : 3개월 → 6개월

#### 6) 인증기준 부적합사항 구체화(제25조)

\* 사후관리심사 1회 실시 시 2건이상의 중부적합 사항 발생 또는 직전의 사후관리심사와 동일한 요구조건에서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

#### 7)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하여 7근무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가 어려울 경우 연장 사유와 통보예정일자 통보절차 신설(제26조)

#### 8) 인증조직의 허위홍보 금지 사항 개정내용 반영(제27조)

\* 인증취소가 되었음에도 유효한 것으로 홍보 또는 인증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

#### 9)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(별표 제1호)

### 나.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사항 반영

품질주관부서 변경 : 획득정책과 → 인증기획과(제24조, 제25조, 제27조)

## 다. 인증심사 관련 기준 구체화 및 심사기준 강화

1) 인증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제품생산실적자료의 제출 및 확인목적 명확화(제7조, 제8조)

\* 신청한 인증범위의 적절성 여부 확인용(일부에서는 제품인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음)

2) 품질보증활동과 연계 현장심사 및 사후관리심사 심층 확인 대상 명시(제15조, 제19조)

\* 위변조·내부시험·식별 및 추적성·불합격품관리 등

3) 시정조치 절차 구체화(제17조)

\* 시정조치 주체로 심사팀장 명시, 시정조치 결과 확인시 착안사항 및 방문확인사항 구체화 등

4) 인증취소처분 집행 시 사후관리심사 순연사항 신설(제19조)

5) 갱신심사 내용 구체화(제20조) 및 인증적격심의 처리기간(6개월) 신설(제22조)

\* 인증적격심의 처리기한 내 업체의 시정조치가 미완료될 경우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

6) 인증범위 관련선 판단기준 명확화(별표 제3-1호)

7) 규정 적용범위 및 업무 명확화(제2조)

8) 인증신청서 및 부적합통보서 작성기준 명확화(별지 제1호, 제6-4호)

9) 분야별 인증범위 및 코드 최신화(별표 제2호, 제3호)

\*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무기체계·전력지원체계를 기준으로 최신화

## 라. 기타 사항

- 오기 수정(ISO표준번호 오기, 오타자 등) (제4조, 제13조)